

주 관 국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 입 기 관
지역경제국 (연료과)	카.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시공자에 대한 시정명령, 보고·검사 및 과태료의 부과·징수	○ 동법 제15조의4·제35조 및 제48조	
별표 환경관리실(폐기물관리과) 사무명란에 제		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	
주 관 국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 입 기 관
환경관리실 (폐기물관리과)	2. 관할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·청문·이의신청 및 체납관리	○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63조	· 한강관리사업소장 ·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
<p>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시립기능대학설치조례안</p> <p>제 1 조(설치) 기술이론과 실기기능을 겸비한 다기능기술자·기능장 등 고급 기능인력을 양성하고, 청소년들에게 기술 교육·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립기능대학(이하“기능대학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</p> <p>제 2 조(위치) 기능대학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상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정하여 고시한다.</p> <p>제 3 조(운영) 기능대학은 그 설치목적과 기능대학법 및 교육관계법 등의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제 4 조(과정의 설치·운영등) ①기능대학에 기능대학법에 의한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을 둔다. ②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를 둔다.</p> <p>제 5 조(승인) 기능대학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과의 설치 및 폐지 2. 학생정원의 증감 3. 재정에 관한 사항 4.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<p>제 6 조(공무원) 기능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</p>		<p>제 7 조(감독) 기능대학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.</p> <p>제 8 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부 칙 제 1 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 2 조(경과조치)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(이하“전문학교”라 한다)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학교의 직업훈련과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능대학의 직업훈련과정으로 본다.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전문학교의 직업훈련과정에 재적중이거나 수료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기능대학의 직업훈련과정에 재적중이거나 수료한 것으로 본다. ③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기능대학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 기능대학준비단장이 행한 행위 또는 기능대학준비단장에게 행한 행위는 이를 기능대학의 장이 행한 행위 또는 기능대학의 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. ④이 조례 시행후 종전의 전문학교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및 그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한 기능대학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및 그 정원으로 기능대학 직제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</p> <p>제 3 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서울특별시립청소년 직업전문학교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</p> <p>.....</p>	